

<참고> 코로나 19로 인해, 2020.12.31 이내 건강검진이 어려운 경우, 내년 6월까지 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측에 건강검진 유예신청을 직접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신청서(검진실시 확약, 과태료부과 인지 및 본인부담 동의) 제출시 회사에서 일괄 유예신청하여 드립니다.

건강검진 유예신청서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파견근무지)		직 무	
입사일자		연 락 처	
건강검진 기간 만료일	2020년 12월 31일	건강검진 유예기간 만료일	2021년 06월 30일

<건강검진 유예사유>

[해당 사유에 동그라미 " O " 체크, 해당사유 없는 경우 기타란에 내용작성]

* (1),(2) 사유선택시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필요 (검진예약확인서 등)*

(1) 검진기관의 사정 (1일 수검인원 제한등)

(2) 검진 당일 이상 소견 (발열,기침 등)

(3)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유예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의무가 있음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 175조)
 단,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20년도 일반건강검진'을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예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퇴사시 과태료 적용대상이 되는 점을 본인은 인지하였으며, 검진 유예기간동안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유예기간내 검진을 받지 않거나 미검진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_____ (인)

(주)크릭앤리버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귀하